

수 신: 전국 병원(의료원)장

제 목: 임시공휴일 진찰료 산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4342(2015.8.5.)

2. 우리 협회에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 예정인 2015년 8월 14일이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에 따라 공휴가산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바, 아래와 같이 회신받아 안내드립니다.

○ 회신 내용

-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서 말하는 '공휴일'은 제 2 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 3 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며, 임시공휴일은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됨

- 따라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에서 규정하는 「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공휴일에는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며, 2015년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확정될 경우 공휴일 가산이 가능함

※ 2015. 8. 14 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8월 11 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예정임. 끝.

대한병원협회



대리 김수한 팀장 정윤학 국장 류향수

시행: 보험국 제2015-363(2015.08.05.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 13층 / 홈페이지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4 전송(FAX:02-705-9259) E-mail: kimsh@kha.or.kr